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3
----------	-----

2011년 2월 2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2011년 2월 15일
- 다. 상정일자: 2011년 2월 23일 , 수정가결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공보담당관 조신)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보급하는 각종 홍보물, 영상물과 간행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간행물 심의와 판매·보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3조)
- 심의위원회에서는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여부,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 위원회에서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가. 총괄 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보급하는 각종 홍보물, 영상물과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홍보물 등의 제작필요성, 중복성 및 공공성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교육가족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및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은 홍보물·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제작하는 영상물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간행물은 발행부서(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가 제작하는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홍보물·영상물과 달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은 간행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홍보물 등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부 내용

1) 발행부서의 정의에 대하여(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는 “홍보물·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교육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의미하고 발행부서라 함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만을 의미하게 됨.
- 따라서 안 제2조제2호 간행물은 발행부서의 정기간행물, 단행본을 말한다, 안 제4조제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는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한다, 안 제11조제1항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은 동 조례안에서 말하는 간행물에서 제외되어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됨.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등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 등과 차별되게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안 제2조제2호 간행물 정의, 안 제4조제1호 심의회 기능, 안 제11조제1항 사전심의 대상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 제2조제1호를 “홍보물·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고 한다)이 대내·외적으로~~~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1조제1항의 발행부서를 “발행기관”이라고 수정하여 판매 및 보급 대상 간행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으로써 기관간의 형평성 및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에 대하여(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등에 대하여 제작의 필요성, 중복성 및 공공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홍보방향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홍보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홍보물 등에 대한 심의가 제작 의도나 편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심의권과 편집권 사이에서 역할을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위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위원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위원의 임기 및 위원 결격사유에 대하여(안 제6조, 신설)

- 안 제6조에 의하면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위촉위원과 달리 재직기간으로 그 임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한 동 조항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간행물의 판매 보급에 대하여(안 제4조제4호, 제14조, 제15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161종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4천 8백여만원 상당의 기록물을 판매하여 서울특별시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교육의 특성화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준 높은 간행물을 발행하고, 간행물의 판매와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가.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나. 교육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1) 일 시 : 2011.2.23.(수), 제2차 교육위원회
- 2) 발의자 : 윤명화 의원
- 3) 수정내용 : 별첨
- 4)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교육청홍보물등의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233
------	-----

2011년 2월 23일
교육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동 조례안은 홍보물·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제작하는 영상물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간행물은 발행부서(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가 제작하는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은 간행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홍보물 등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간행물 및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홍보물 등의 정의를 수정하고 자 함.
- 다. 그 밖에 입법이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발행부서”를 “발행기관”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1조제1항)
- 다.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라.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홍보물등의심의회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회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간행물 심의회”를 “간행물의 심의회”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로, “홍보를”을 “홍보하는 것을”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발행부서의”를 “발행기관의”로 한다.

안 제3조 중 “제작과 발행에”를 “제작·발행 및 보급에”로 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을 “발행기관의”로, “제작의”를 “제작·발행 및 보급의”로 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제작되는”을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등의 공공성 여부”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교육감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위원회 위원은”을 삭제하고, “8명”을 “7명”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하고, “시의원 1명”을 “교육위원 2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를 추가하고, “ 하고,”를 “하며,”로,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한다.

안 제7조 중 “제7조(위원장의 직무)”를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하고,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7조 중 “위원장은”을 “② 위원장은”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0조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3조에”를 “제14조에”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1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항 중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을 “발행기관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제3호 중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을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위원장은 발간·제작의”를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발행 및 보급의”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2항 중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을 “심의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장 중 “간행물의 판매보급”을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5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4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u>심의회</u>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홍보물·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p> <p>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u>발행부서</u>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p> <p>제2장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p> <p>제3조(설치)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u>제작과 발행</u>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발행부서</u>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u>제작</u>의 필요성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 <u>간행물의 심의회</u> ----- -----.</p> <p>제2조(정의) -----</p> <p>1.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u>발행기관</u>”이라 한다)이 ----- ----- <u>홍보하는 것을</u> ----- -----.</p> <p>2. ----- <u>발행기관의</u> -----.</p> <p>제2장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p> <p>제3조(설치) ----- <u>제작·발행 및 보급</u> ----- -----.</p> <p>제4조(기능) -----</p> <p>1. <u>발행기관의</u> ----- ----- <u>제작·발행 및 보급</u>의 -----</p>

- 2. 유사·중복으로 제작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
- 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보담당관,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위원회 위원은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8명
 -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2. -----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 -----
- 3. ----- 등의 공공성 여부

4. (원안과 같음)

제5조(구성) <삭제> -----

----- 서울특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

- 1. <삭제>-----
----- 7명
- 2. ----- 교육위원회 -----
----- 교육위원 2명

<삭제>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 1년으로 하며, ----- 기간으로 -----.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 -----.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시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③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 ① -----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② -----,
출석위원 -----.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

제14조에 -----
----- 예산의 범위에서 -----
-----.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기관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
4.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12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발간·제작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간행물의 판매보급

제14조(판매가격)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발행 및 보급-----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심의에 필요한 경우 -----
-----,

-----.

제3장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

제15조(판매가격) (원안과 같음)

제16조(판매방법)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④ 위탁 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신설>

④ -----

-----, -----
--- 범위에서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물·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발행기관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제2장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기관의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발행 및 보급의 필요성 여부
2. 유사·중복으로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
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의 공공성 여부
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보담당관,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2명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시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기관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③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발행 및 보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

제15조(판매가격)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 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